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15
----------	-----

2021. 1. 28.(목)  
교 육 위 원 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 나. 제출일자: 2021년 1월 11일
- 다. 회부일자: 2021년 1월 12일
- 라. 상정일자: 2021년 1월 20일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박승렬)

가. 제안이유

- 2021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지역현안수요 증원 반영과 교육행정수요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 (안 제2조)

1) 지방공무원 총수: 3,348명 → 3,402명 (+54명)

○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 (안 제4조, 별표3)

1) 일반직: 3,020명 → 3,070명 (+50명)

○ 5급이하: 2,980명 → 3,030명 (+50명)

2) 교육전문직원: 308명 → 312명 (+4명)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70명 → 274명 (+4명)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홍만표)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3,348명에서 3,402명으로 54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세부 증원 내역은 아래와 같음.

직종	수요별	정원					세부내역		
		본청 (단위회)	직속	지역	학교	계	내용	인원	비고
일반직	국가정책	7	1	1		9	▪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지원	1명	
							▪ 유아 NEIS 구축·운영	1명	
							▪ 교육분야 성폭력 근절 지원	1명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1명	
							▪ 초·중등 온라인 인프라 구축	1명	
							▪ 학교 감염병 대응	2명	
							▪ '21년 교육청 정보보호	1명	
							▪ 유치원 급식관리	1명	
	지역현안			9		9	▪ 충북행복교육지구	1명	

							▪ 학교정보화지원	8명	
	자체수요	6(2)	4	13	9	32(2)	▪ 본청 - 신설업무 ▶임용제도 변경 2명 ▶충청권교육감정책협의회 간사업무 1명	3명	
							- 속기	1명	
							▪ 도의회: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입법정책담당관)	2명	
							▪ 직속: 센터신설 4명 (S/W 체험센터, 환경교육체험센터)	3명	
								1명	
							▪ 지역 - 고교학점제 업무 이관	5명	
							- 사립학교 시설업무 지원	4명	
							- 그린스마트스쿨 등 시설사업 추진	4명	
							▪ 학교: 학급수 변동 및 신설 통합 학교 기준 변경	9명	
소계		13	5	23	9	50			
전문직	국가정책	2				2	▪ 미래형 원격수업 등 지원	2명	장학사
	자체수요			2		2	▪ 고교학점제 업무 지역 이관	2명	장학사
소계		2	0	2	0	4			
국가정책		9	1	1		11			
지연현안				9		9			
자체수요		6	4	15	9	34			
합 계		15	5	25	9	54			

○ 세부 증원 내역 중 고교학점제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5명을 증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관하는 고교학점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5명을 증원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 개정안의 다른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348명” 을 “3,402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명” 을 “9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033명” 을 “3,08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08명” 을 “312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402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070	-			
3급	4		4		
4급	23	1	20	2	
5급 이하 소계	3,030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312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74	-			
별정직 계	7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348명</u>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 <u>7명</u></li> <li>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u>3,033명</u> (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 한다)</li> <li>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 <u>308명</u></li> </ol>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3,402명</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 <u>9명</u></li> <li>2. ----- ----- : <u>3,081명</u> -----</li> <li>3. ----- ----- : <u>312명</u></li> </ol>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width: 10%;">총계</th> <th style="width: 10%;">도의회 사무처</th> <th style="width: 10%;">본청 (직속기관 포함)</th> <th style="width: 10%;">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th> <th style="width: 10%;">공립 각급학교</th> </tr> </thead> <tbody> <tr><td>총계</td><td>3,348</td><td>-</td><td>-</td><td>-</td><td>-</td></tr> <tr><td>정무직 계</td><td>1</td><td></td><td>1</td><td></td><td></td></tr> <tr><td>교육감</td><td>1</td><td></td><td>1</td><td></td><td></td></tr> <tr><td>일반직 계</td><td>3,020</td><td>-</td><td>-</td><td>-</td><td>-</td></tr> <tr><td>3급</td><td>4</td><td></td><td>4</td><td></td><td></td></tr> <tr><td>4급</td><td>23</td><td>1</td><td>20</td><td>2</td><td></td></tr> <tr><td>5급 이하 소계</td><td>2,980</td><td></td><td>-</td><td></td><td></td></tr> <tr><td>전문경력관 소계</td><td>13</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직 계</td><td>12</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사 소계</td><td>12</td><td></td><td>-</td><td></td><td></td></tr> <tr><td>교육전문직원 계</td><td>308</td><td>-</td><td>-</td><td>-</td><td>-</td></tr> <tr><td>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td><td>38</td><td></td><td>27</td><td>11</td><td></td></tr> <tr><td>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td><td>270</td><td></td><td>-</td><td></td><td></td></tr> <tr><td>별정직 계</td><td>7</td><td>-</td><td>-</td><td>-</td><td>-</td></tr> <tr><td>4급 상당</td><td>1</td><td></td><td>1</td><td></td><td></td></tr> <tr><td>5급 상당 이하 소계</td><td>6</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348	-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020	-	-	-	-	3급	4		4			4급	23	1	20	2		5급 이하 소계	2,980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	-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308	-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70		-			별정직 계	7	-	-	-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width: 10%;">총계</th> <th style="width: 10%;">도의회 사무처</th> <th style="width: 10%;">본청 (직속기관 포함)</th> <th style="width: 10%;">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th> <th style="width: 10%;">공립 각급학교</th> </tr> </thead> <tbody> <tr><td>총계</td><td>3,402</td><td>-</td><td>-</td><td>-</td><td>-</td></tr> <tr><td>정무직 계</td><td>1</td><td></td><td>1</td><td></td><td></td></tr> <tr><td>교육감</td><td>1</td><td></td><td>1</td><td></td><td></td></tr> <tr><td>일반직 계</td><td>3,070</td><td>-</td><td>-</td><td>-</td><td>-</td></tr> <tr><td>3급</td><td>4</td><td></td><td>4</td><td></td><td></td></tr> <tr><td>4급</td><td>23</td><td>1</td><td>20</td><td>2</td><td></td></tr> <tr><td>5급 이하 소계</td><td>3,030</td><td></td><td>-</td><td></td><td></td></tr> <tr><td>전문경력관 소계</td><td>13</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직 계</td><td>12</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사 소계</td><td>12</td><td></td><td>-</td><td></td><td></td></tr> <tr><td>교육전문직원 계</td><td>312</td><td>-</td><td>-</td><td>-</td><td>-</td></tr> <tr><td>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td><td>38</td><td></td><td>27</td><td>11</td><td></td></tr> <tr><td>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td><td>274</td><td></td><td>-</td><td></td><td></td></tr> <tr><td>별정직 계</td><td>7</td><td>-</td><td>-</td><td>-</td><td>-</td></tr> <tr><td>4급 상당</td><td>1</td><td></td><td>1</td><td></td><td></td></tr> <tr><td>5급 상당 이하 소계</td><td>6</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402	-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070	-	-	-	-	3급	4		4			4급	23	1	20	2		5급 이하 소계	3,030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	-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312	-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74		-			별정직 계	7	-	-	-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348	-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020	-	-	-	-																																																																																																																																																																																																								
3급	4		4																																																																																																																																																																																																										
4급	23	1	20	2																																																																																																																																																																																																									
5급 이하 소계	2,980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	-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308	-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70		-																																																																																																																																																																																																										
별정직 계	7	-	-	-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402	-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070	-	-	-	-																																																																																																																																																																																																								
3급	4		4																																																																																																																																																																																																										
4급	23	1	20	2																																																																																																																																																																																																									
5급 이하 소계	3,030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	-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312	-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8		27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74		-																																																																																																																																																																																																										
별정직 계	7	-	-	-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 관계법령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4.7. 일부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2021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반영
- 교육행정 수요 등에 대한 현장 지원 강화
- 관련근거: 2021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  
【교육부 학교정책과-3920(2020.9.21.)】

## 2. 비용 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54명(일반직 50명, 교육전문직원 4명) 인건비

## 3. 관련조문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② ~ ④ 생략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21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단가 적용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간 인건비 추계		연도별 인건비 추계					
산출기초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1. 정규직인건비	4,311,922	4,325,506	4,443,593	4,564,904	4,689,526	4,817,549	22,841,078
가. 일반직 76,287,000원×50명=	3,814,350	3,814,350	3,918,482	4,025,457	4,135,352	4,248,247	20,141,888
나. 교육전문직원 124,393,000원×4명=	497,572	511,156	525,111	539,447	554,174	569,302	2,699,190

※ 치우개선을 적용 (2.73%)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4,325,506	4,443,593	4,564,904	4,689,526	4,817,549	22,841,078
보통교부금		4,325,506	4,443,593	4,564,904	4,689,526	4,817,549	22,841,078
세출		4,325,506	4,443,593	4,564,904	4,689,526	4,817,549	22,841,078
정규직인건비		4,325,506	4,443,593	4,564,904	4,689,526	4,817,549	22,841,078
재원조달		4,325,506	4,443,593	4,564,904	4,689,526	4,817,549	22,841,078
의존 재원	소계	4,325,506	4,443,593	4,564,904	4,689,526	4,817,549	22,841,078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4,325,506	4,443,593	4,564,904	4,689,526	4,817,549	22,841,078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